제4호(2015. 5. 19.)

한·중 FTA 농업 분야 평가와 시사점

이상현 정대희

1. 협상 경과 ····· 1
2. 협정문 주요 내용 ····· 2
3. 협정 내용 평가 ····· 8
4. 시사점 ·····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2-3299-4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이상현 부연구위원 02-3299-4037 sh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에 가서명을 완료함.**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을 합의하였음.
-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완료 이후 협정문을 공개함.

○ **우리나라는 농산물 1,611개 세번 중 약 36%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은 1,131개 세번 중 9%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함.**
- [우리나라] 쌀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였음.
- [중국] 쌀, 설탕, 밀가루, 담배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밀크와 크림, 건조인삼, 밤 등도 양허제외하였음.

○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함.**
-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감축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 측도 농산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는 WTO/SPS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측이 주장한 동식물 유병의 지역주의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음. 또한 양국은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에 반출하기로 하여 특혜적용대상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함.**

○ **세번 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크나, 양국 간 평균 교역액을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큼. 양국 모두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소화함.**

○ **양허수준이 낮음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양국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한 관세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클 것임. 수출입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피해 최소화 노력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협상 경과

□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initialing)을 완료하였음.**

○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서 민감품목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로 합의함.

- 1단계 협상에서는 기본원칙(모댈리티), 즉 민감품목의 범위와 관세철폐 방식에 대하여 협의함.
- 2단계 협상에서는 개별 품목별 개방 수준과 방식 등을 포함한 각 분야별 협정문에 대하여 전면적 협의함.

○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통하여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군 정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함.
  ① 일반품목군: 10년 이내 관세 철폐
  ② 민감품목군: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③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TRQ, 부분 감축, 계절관세 등
- 자유화 수준(20년 내 관세 철폐)은 세번 기준 전체 품목의 90%(수입액의 85%) 이상이며, 초민감품목은 10%(수입액의 15%) 이내임.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협상대상을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22개 분야로 세분하고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을 합의함.

○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initialing)이 완료되어 한·중 FTA 협정문을 공개함.

- 협정문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정식 서명(signing)은 2015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한·중 FTA 2015년 2월 가서명 완료”

2. 협정문 주요 내용

2.1. 시장접근

2.1.1. 우리 측 양허

“우리나라는 1,611개 농산물 중 쌀을 포함한 548개 양허제외”

□ **한·중 FTA에서는 1,611개 양허대상 농산물 가운데 약 36%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고 이 중 93%가 양허제외됨.**

○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을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양허대상 농산물의 34%에 해당하는 548개 세번을 양허에서 제외함.[1)]

– 협상 개시 전 우려와 달리 기존의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였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전분,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을 모두 양허제외함.

○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26개 세번은 부분감축으로 양허함.

–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는 1% 감축하기로 함.

– 면, 들깨, 송이버섯(냉동) 등 8개 품목은 10% 감축하기로 함.

– 밀(펠릿/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등 15개 품목은 130%로 감축하기로 함.

□ **민감품목 441개 세번 중에서 202개 세번은 15년 철폐, 239개 세번은 20년 철폐하기로 함.**

○ 해바라기씨유(정제유), 바나나(기타/플랜테인), 망고스틴(신선/건조), 망고(신선/건조), 두리안(신선), 마가린(액상제외) 등은 15년 철폐하기로 함.

○ 소주, 맥주, 도라지(신선/냉장), 인삼음료,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등은 20년 철폐하기로 함.[2)]

---

1) 농산물 양허제외 비율은 한·미 FTA 1.1%, 한·EU FTA 2.8%, 한·호주 FTA 10.5%임.

2) 과실견과(조제저장처리), 기타 과실(잼, 젤리, 마멀레이드)는 11년차부터 매년 균등하게 철폐, 기타 한약재(기타 식품–향료, 의료용 등)는 13년차부터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함.

□ **일반품목 589개 세번 중에서 216개 세번은 즉시 철폐, 209개 세번은 5년 철폐, 164개 세번은 10년 철폐하기로 함.**

○ 소(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등은 즉시 철폐하기로 함.

○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옥수수박, 식혜, 사탕무, 대두유(정제유/조유) 등은 5년 철폐하기로 함.

○ 코냑, 흰 포도주(기타), 샤프란, 쿠키 및 크래커, 붉은 포도주(기타), 마요네즈, 아몬드(탈각) 등은 10년 철폐하기로 함.

□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7개 세번은 저율관세할당량(TRQ)을 제공하는 조건부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팥(3천 톤), 맥아(5천 톤), 고구마전분(5천 톤), 대두(1만 톤), 참깨(2만 4천 톤),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3만 8천 톤) 등은 현행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함.

– 한중 FTA 쿼터 내(in-quota) 관세율은 모두 0%임.

– 이들 품목은 이미 WTO TRQ 대상품목이므로 한중 FTA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7개 세번은 TRQ 제공

표 1. 한중 FTA에서 TRQ 제공 품목

단위: 톤

HSK 2012	기준 관세율 (%)	품목	TRQ		수입량	
			한중 FTA	WTO	전체	중국
0713.32.9000	420.8 (30)[1)]	팥 (기타)	3,000	29,500 (녹두포함)	23,981	23,932
1107.10.0000	269.0 (30)	맥아 (볶지 않는 것)	5,000	40,000	208,483	13,228
1108.19.1000	241.2 (11)	그 밖의 전분 (고구마로 만든 것)	5,000	40,176	26,826	25,897
1201.90.3000	487.0 (5)	대두 (콩나물용)	3,000	321,805	43,413	35,318
1201.90.9000	487.0 (5)	대두 (기타)	7,000		262,444	45,496
1207.40.0000	630.0 (40)	참깨	24,000	81,700	78,408	30,697
2308.00.9000	46.4 (5)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기타)	38,000	32,133	99,578	80,380

주 1) 괄호안의 세율은 WTO TRQ 관세(in-quota)임.
2) 수입 자료는 2012~2014년 평균 수입량(톤)임.
자료: Global Ttade Atlas.

표 2. 한중 FTA에서 한국 농산물 양허현황

양허유형			세 번 수	비중(%)	주요 품목
일반 품목	즉시철폐		216	13.4	소, 오리, 돼지,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사탕무,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등
	10년 철폐		164	10.2	코냑, 포도주,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쿠키 및 크래커, 보드카, 아몬드(탈각) 등
소계			589	36.6	
민감 품목	15년 철폐		202	12.5	팜핵유(정제유), 바나나, 망고스틴, 두리안, 구아버,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 팝콘(조제저장처리),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 철폐	11년차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 과실(잼, 젤리, 마멀레이드 기타)
		13년차	1	0.1	기타 한약재(기타 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낙화생유, 인삼음료, 기타 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초민감 품목	현행관세+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감축	1% 부분감축	3	0.2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10% 부분감축	8	0.5	팥(탈각/조제),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기타/조제),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
		130%로 감축	15	0.9	매니옥, 매니옥칩, 매니옥펠릿, 밀(펠릿/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토란(기타)
	협정 배제		16	0.99	쌀(멥쌀, 찹쌀, 벼, 쌀가루 등)
	양허제외		532	33.0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탈전지분유 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 버터, 꿀, 감귤, 오렌지, 사과 배 포도, 키위, 호박,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소계			581	36.1	
총합계			1,611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1.2. 중국 측 양허

□ **중국은 1,131개 양허대상 농산물 가운데 약 9%인 102개 세번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고, 그중 101개 세번이 양허제외됨.**

○ 중국은 중국이 체결한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하였던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 주요 수출품인 건조인삼, 밀크와 크림, 밤(미탈각) 등도 양허제외하였음.

○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기타 조제식료품 1개 세번은 부분 감축하였음.

- 기타 조제식료품(20%→18.4%)

□ **민감품목 304개 중에서 203개 품목은 15년 철폐, 101개 품목은 20년 철폐하기로 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은 15년 철폐하기로 함.

○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간장, 발효주, 오리고기 등은 20년 철폐하기로 함.

□ **일반품목 725개 중에서 221개 품목은 즉시 철폐, 65개 품목은 5년 철폐, 439개 품목은 10년 철폐하기로 함.**

○ 사료용 조제품, 잼, 과실젤리, 채소 종자 등은 즉시 철폐하기로 함.

○ 양모, 수모, 오렌지 주스(냉동), 커피(볶지 않은 것) 등은 5년 철폐하기로 함.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등 주요 신선 과일과 냉동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소시지 등은 10년 철폐하기로 함.

“

중국은 1,131개 농산물 중 쌀, 건조인삼, 밀크와 크림 등을 포함한 101개 양허제외

”

표 3.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한·중 FTA		주요 품목
		세번 수	%	
일반 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젤리, 채소 종자 등
	5년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 돼지 고기·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소계		725	64.1	
민감 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20년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소계		304	26.9	
초민감 품목	부분 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 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소계		102	9.0	
총합계		1,131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부분의 농산물이 완전생산 기준임”

2.2. 원산지 규정

□ **대부분의 농산물이 완전생산기준임(신선농산물인 01류~14류와 가공농산물 중에서도 15류, 17류, 24류는 완전생산기준).**

○ 누적 기준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하기로 함.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De-minimis)과 관련하여 제15류~24류(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기록유지 요건을 완화한 반면, 검증에 있어서 각 단계별 구체적 시한을 명시함.**

○ 한·미 FTA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5년이였으나, 한·중 FTA에서는 3년으로 정함.

○ 원산지 검증에서 서류접수, 답변, 최종판정 등에 대한 구체적 시한을 명시하여 검증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함.

2.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무역원활화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지역주의 조항은 삭제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들은 FTA상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WTO/SPS 협정 준수,
지역주의 조항 미반영

”

□ **한·중 FTA에서는 무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세부적 조항을 포함함.**

○ 정보의 전자적 제출,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 반출, 보세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이동시키지 않고 반출 등을 명시함.

3. 협정 내용 평가

▫ 세번 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큼.

○ 세번 수 기준으로 우리는 양허제외가 34%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철폐 품목이 10%, 5년 철폐 품목이 13%, 즉시 철폐 품목이 13%임.

○ 세번 수 기준으로 중국은 양허제외가 9%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철폐 품목이 39%, 5년 철폐 품목이 6%, 즉시 철폐 품목이 19%임.

○ 세번 수 기준으로 우리의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은 63.9%이며, 중국의 자유화율은 91.0%임.

○ 우리나라는 대 중국 평균 농산물 관세율(2012년 기준)이 56.7%에서 41.1%로 낮아지며, 중국은 대 한국 평균 농산물 관세율이 평균 15%에서 2.9%로 낮아짐.

- 우리나라 양허제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16.7%임. 양허제외 품목 외의 평균 관세율은 25.7%이며, 평균 2.1%로 관세가 인하됨.
- 중국 양허제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32.5%임. 양허제외 품목 외의 평균 관세율은 13.3%이며, 평균 0.0%로 관세가 인하됨.

"세번 수 기준으로 중국 측 시장개방 폭이 더 큼"

그림 1. 한중 FTA 농산물 양허유형(세번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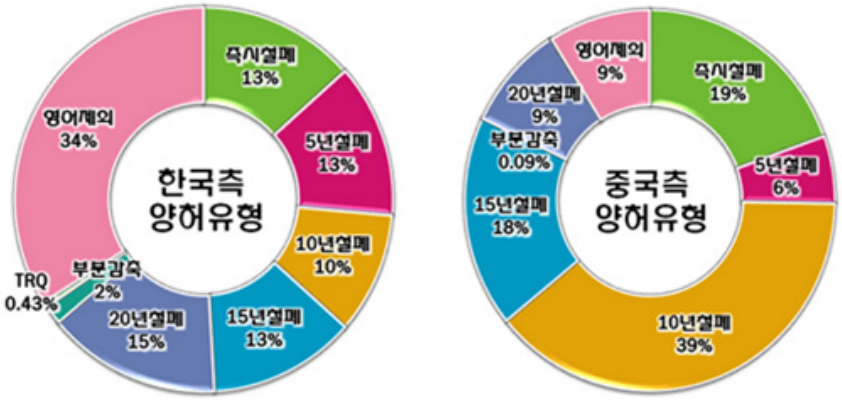

▫ 양국 간 2012~2014년 평균교역액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큼.

○ 단순히 세번 수 기준으로만 살펴볼 경우 실제 교역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장개방의 폭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움(부록 참고).

- 우리 측 양허안을 보면 육류(02류)의 경우 112개 세번 중에서 74개 세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12~2014년 대 중국 육류 평균수입액은 11만 달러에 불과함(전체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0.004%에 불과).
- 채유용종자 인삼(12류)의 경우 우리는 세번 기준으로 자유화율이 70.0%이나 대 중국 수입액 기준으로는 39.4%이며, 중국은 세번 기준으로 자유화율이 98.0%이나 대 한국 수입액 기준으로는 28.7%에 불과함.

○ 대 중국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양허제외가 31%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철폐 품목이 12%, 5년 철폐 품목이 1%, 즉시 철폐 품목이 16%임.

○ 대 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양허제외가 47%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철폐 품목이 7%, 5년 철폐 품목이 0%, 즉시 철폐 품목이 4%임.

○ 양국 간 2012~2014년 평균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측 농산물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은 44.9%이며, 중국 측 농산물 자유화율은 46.6%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측 모두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소화함.

○ 우리 측의 경우 채소(07류), 곡물(10류), 밀가루전분(11류), 육어류 조제품(16류)의 자유화율이 낮고, 중국 측의 경우 낙농품(04류), 과실견과류(08류), 당류 설탕과자(17류)의 자유화율이 낮음.

- 우리 측의 경우 2012~2014년 대 중국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채소(07류)의 경우 145개 세번(493백만 달러) 중에서 101개 세번(454백만 달러)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됨.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시장개방 폭이 더 큼”

– 중국 측의 경우 2012~2014년 대 한국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당류 설탕과자(17류)의 경우 19개 세번(146백만 달러) 중에서 13개 세번(139백만 달러)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됨.

□ **중국 측의 기초농산물에 대한 세번 기준의 가공도별 자유화율이 96.2%나 되지만, 2012~2014년 평균교역액 기준으로 가공도별 자유화율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기초농산물을 보호하고 있음.**

○ 우리 측의 경우 세번 기준으로는 기타의 자유화율이 90.8%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농산물의 자유화율이 57.0%로 가장 낮음. 중국 측의 경우 기초농산물이 96.2%로 가장 높았으며, 가공농산물이 85.1%로 가장 낮음.

– 기초농산물: HS 2단위 01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2류
– 반가공농산물: HS 2단위 02류, 05류, 11류, 13류, 14류, 15류, 23류
– 가공농산물: HS 2단위 04류, 16류, 17류, 18류, 19류, 20류, 21류, 22류, 24류
– 기타: HS 2단위, 28류,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류, 51류, 52류, 53류에 속한 농축산 관련 가공품

“한·중 양국 모두 기초농산물을 보호하였음”

○ 우리 측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반가공농산물의 자유화율이 91.0%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농산물의 자유화율이 19.6%로 가장 낮음. 중국 측의 경우 기타가 98.1%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농산물이 23.2%로 가장 낮음.

그림 2. 한중 FTA 농산물 가공도별 자유화율(세번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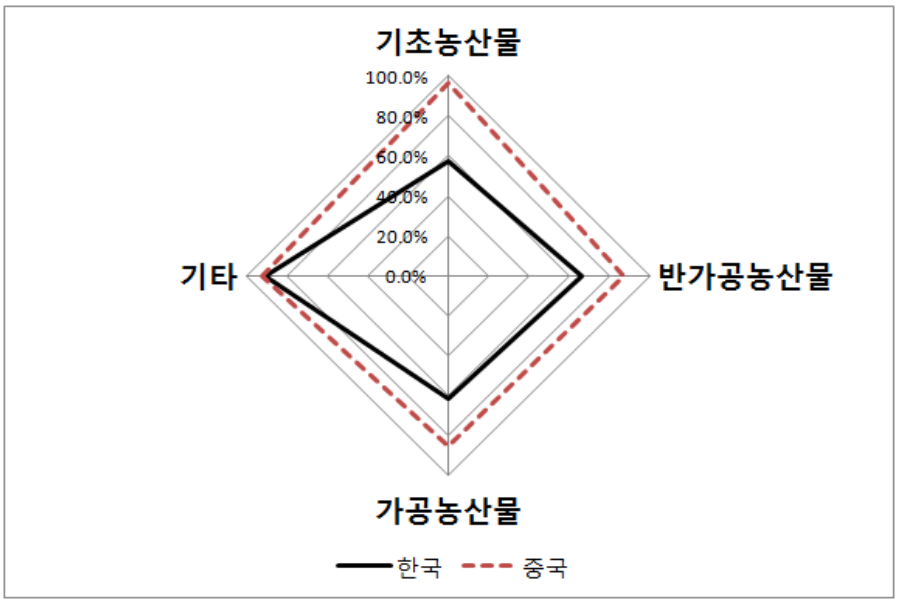

그림 3. 한중 FTA 농산물 가공도별 자유화율(수입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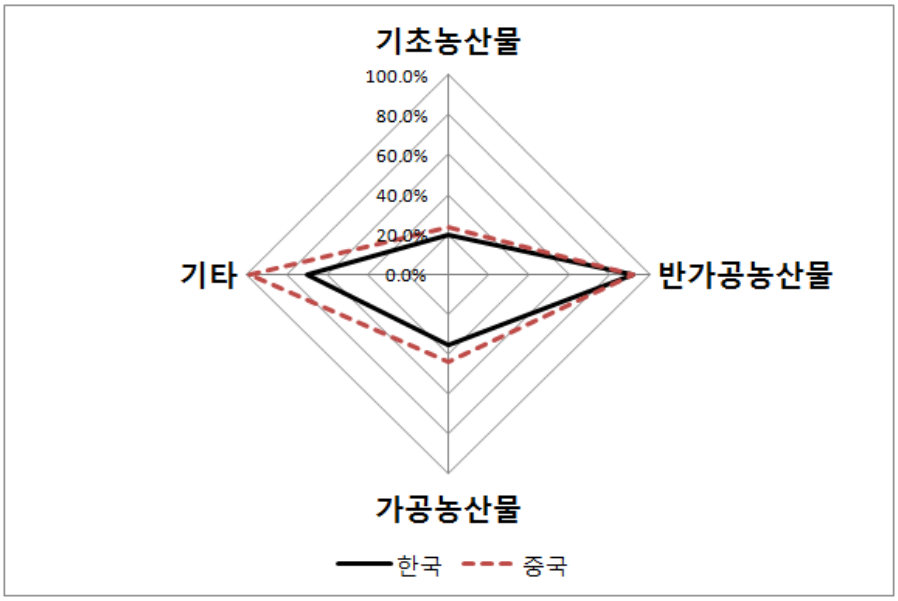

4. 시사점

4.1. 수입 측면

□ 협상 개시 전 우려와는 달리 한·중 FTA는 초민감품목 대부분을 양허제외시킴으로써, 관세 하락이 국내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FTA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쌀이 협상에서 제외되었고,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양허제외됨.

○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 식품과 대두유(식품용), 설탕, 전분 등 국산 원료의 사용률이 높거나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들은 양허제외됨.

- 다만 초민감품목이지만 관세를 10% 감축하기로 한 들깨의 생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냉동, 건조, 조제저장 등 세부품목들도 양허제외시킴으로써 우회수입을 차단함.

- 관세감축률이 1%인 김치와 혼합조미료를 포함한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관세하락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됨.

○ 그 밖의 가공식품의 경우 현행 관세가 낮아 기존 수입량이 많았거나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 이미 시장 개방된 품목이 많음.

- 기존의 식품업체의 국산원료 사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중 FTA로 인한 가공식품 수입 증대가 국내 일반 농산물 생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TRQ 증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등 TRQ 품목들은 이미 WTO TRQ로 수입되고 있음.
- 또한 한·중 FTA TRQ 물량은 현재 WTO TRQ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물량보다 적은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1개 양허대상 농산물 가운데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1,030개 품목은 20년 이내로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식품은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기에, 관세 철폐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국산 농산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중 FTA의 관세 감축폭이 낮거나 양허제외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비록 현재 중국 내 생산이 적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도 한국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및 낮은 생산비용을 토대로 중국 내 생산을 증가시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관세하락 수준과는 별개로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중국 간 농축산물 교역은 FTA 체결과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액은 37억 달러로, 2005년 대비 83.4% 증가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5년 18억 2,824만 달러에서 2014년 28억 2,167만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도 1억 9,067만 달러에서 8억 7,992만 달러로 약 4.6배 증가함.

□ **중국은 FTA 이전에도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였으며, 한중 FTA 이후 양국의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됨. 따라서 기존의 품목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피해 최소화 노력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

”

4.2. 수출 측면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들은 중국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를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 증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밀크와 크림, 밤(신선/미탈각), 건조 인삼, 설탕, 유아용 분유, 아이스크림, 궐련 등은 중국이 양허제외하였음.
- 또한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기타 조제식료품은 초민감품목으로 관세 인하 폭이 낮음(20%→18.4%).
- 20년 철폐 품목 중에서는 설탕과자(HS1704.90)가 주요 수출품이나 원산지규정이 완전생산기준이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그 외 15년 철폐 품목 중 글리세롤(HS1520.00), 10년 철폐 품목 중 커피(볶은 것)(HS0901.12) 등도 원산지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신규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 증대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을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비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의 기회임.

○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은 양국의 검역 기준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검역으로 인한 수출 제한이 거의 없음. 또한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중국산 수입 재료를 사용한 상품은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중 주요 수출품들은 중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혜택이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최근 중국 시장의 변화되는 수요를 분석하여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가공 식품을 바탕으로 대중 수출 확대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한 후 중국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원료를 사용하여 품질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가공식품 수출전략도 설립하여야 함.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전략 모색

”

부록 1. 한중/미/EU/호/캐 FTA에서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324%),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o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 감축	5년	5년	18년	10년
대두	o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o 기타(487%)	양허제외 (채유·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o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전분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o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o 변성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o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o 냉장육(18%), 닭고기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오리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o 체더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감귤류·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사과·배·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인삼류	o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면류	o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부록 2. 한중 FTA 농산물 자유화율(세번 수 기준)

HSK-2	류명	한국			중국		
		전체 세번	관세철폐 세번	자유화율	전체 세번	관세철폐 세번	자유화율
합계		1,611	1,030	63.9%	1,131	1,029	91.0%
01류	산동물	70	55	78.6%	66	66	100.0%
02류	육류	112	38	33.9%	77	77	100.0%
04류	낙농품	69	11	15.9%	39	28	71.8%
05류	동물성생산품	52	47	90.4%	38	38	100.0%
06류	산수목꽃	77	54	70.1%	31	31	100.0%
07류	채소	145	44	30.3%	122	122	100.0%
08류	과실견과류	86	42	48.8%	92	91	98.9%
09류	커피향신료	52	40	76.9%	48	48	100.0%
10류	곡물	44	21	47.7%	36	20	55.6%
11류	밀가루전분	47	9	19.1%	35	24	68.6%
12류	채유용 종자인삼	110	77	70.0%	100	98	98.0%
13류	식물성 엑스	24	16	66.7%	20	20	100.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21	21	100.0%	10	10	100.0%
15류	동식물성 유지	101	90	89.1%	53	29	54.7%
16류	육어류 조제품	24	7	29.2%	22	22	100.0%
17류	당류, 설탕과자	34	17	50.0%	19	6	31.6%
18류	코코아	33	28	84.8%	11	11	100.0%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52	41	78.8%	22	21	95.5%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2	56	50.0%	95	95	100.0%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69	57	82.6%	22	19	86.4%
22류	음료, 주류, 식초	52	49	94.2%	27	27	100.0%
23류	조제사료	46	45	97.8%	28	28	100.0%
24류	연초	26	26	100.0%	12	-	0.0%
28류	무기화학품,무기화합물	2	2	100.0%	1	1	100.0%
29류	유기화학품	2	1	50.0%	2	2	100.0%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	28	25	89.3%	21	21	100.0%
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4	25	73.5%	12	12	100.0%
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	1	50.0%	2	2	100.0%
41류	원피와 가죽	28	28	100.0%	21	21	100.0%
43류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11	11	100.0%	7	7	100.0%
50류	견	16	16	100.0%	13	13	100.0%
51류	양모,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11	11	100.0%	16	10	62.5%
52류	면	10	10	100.0%	5	3	60.0%
53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9	9	100.0%	6	6	100.0%

부록 3. 한중 FTA 농산물 자유화율(2012년~2014년 대 중국 / 대 한국 수입액 기준)

HSK-2	류명	한국			중국		
		전체 수입	관세철폐 수입	자유화율	전체 수입	관세철폐 수입	자유화율
합계		2,747	1,233	44.9%	496	231	46.6%
01류	산동물	3	3	100.0%	0	0	100.0%
02류	육류	0	0	38.4%	0	0	100.0%
04류	낙농품	3	0	2.3%	10	0	1.9%
05류	동물성생산품	135	132	97.8%	17	17	100.0%
06류	산수목꽃	30	13	42.3%	2	2	100.0%
07류	채소	493	39	7.9%	0	0	100.0%
08류	과실견과류	49	18	37.4%	19	0	0.2%
09류	커피향신료	33	3	9.0%	1	1	100.0%
10류	곡물	196	13	6.6%	0	-	0.0%
11류	밀가루전분	41	3	6.8%	1	0	5.7%
12류	채유용 종자인삼	346	136	39.4%	29	8	28.7%
13류	식물성 엑스	46	44	94.0%	7	7	100.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2	2	100.0%	0	0	100.0%
15류	동식물성 유지	20	16	77.4%	9	7	80.6%
16류	육어류 조제품	29	0	0.2%	1	1	100.0%
17류	당류, 설탕과자	86	30	35.5%	146	7	5.1%
18류	코코아	16	16	100.0%	4	4	100.0%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34	57	42.6%	75	47	63.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312	73	23.4%	15	15	100.0%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40	53	38.1%	67	32	47.6%
22류	음료, 주류, 식초	30	30	100.0%	70	70	100.0%
23류	조제사료	475	459	96.6%	4	4	100.0%
24류	연초	11	11	100.0%	10	-	0.0%
28류	무기화학품,무기화합물	0	0	100.0%	-	-	N / A
29류	유기화학품	3	1	30.5%	0	0	100.0%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	14	14	100.0%	4	4	100.0%
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45	14	30.6%	2	2	100.0%
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	1	46.9%	0	0	100.0%
41류	원피와 가죽	0	0	100.0%	-	-	N / A
43류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0	0	100.0%	-	-	N / A
50류	견	23	23	100.0%	-	-	N / A
51류	양모,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27	27	100.0%	0	-	0.0%
52류	면	0	0	100.0%	2	2	95.9%
53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0	0	100.0%	0	0	100.0%

부록 4. 한중 FTA 농산물 가공도별 자유화율(국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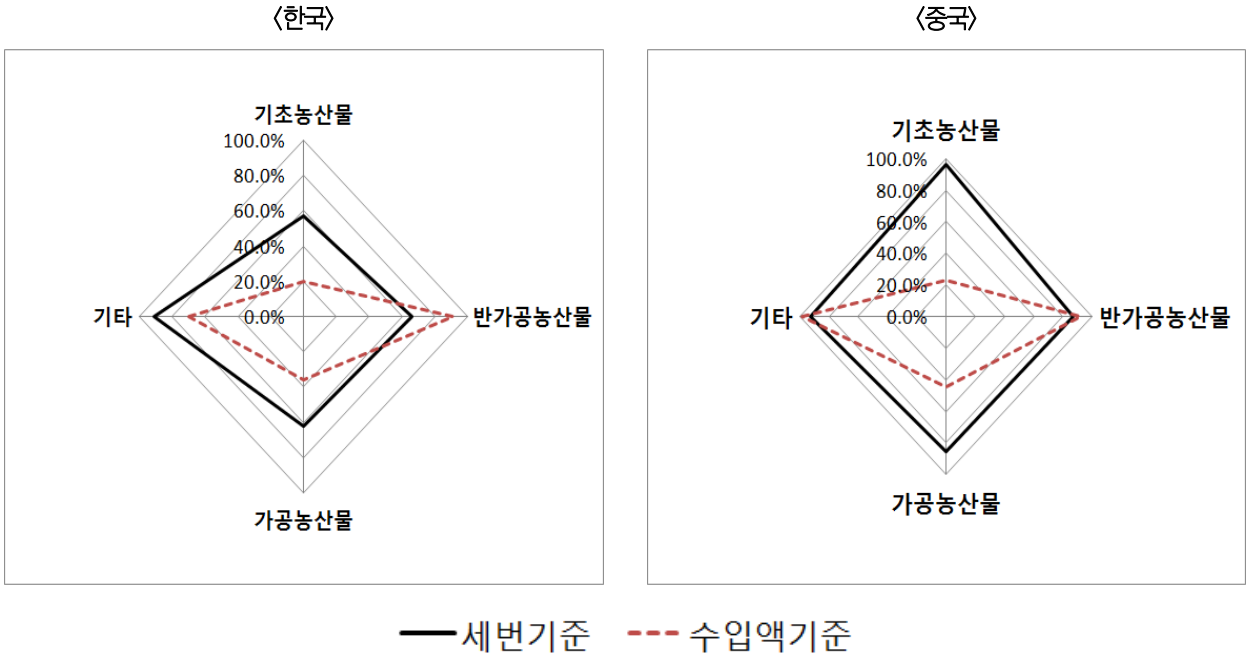

KREI 현안분석 제4호
한·중 FTA 농업 분야 평가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5. 19.
발 행 2015. 5. 19.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